

企業財務構造의 現象과 課題

李 龍 煥

〈全經聯 調查部 調查役〉

I. 머리말

우리 경제는 지금 시련을 맞고 있다. 經濟開發政策을 추진한 이후 어느 때보다도 깊은 陳痛을 겪고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經濟安定回復에 대하여는 누구도 확실한 展望을 주저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성과를 나타내는 GNP 成長率이 80 年度 1/4 分期 중에는 前年同期對比 마이너스 1.7% 成長을 기록하여 16 年만의 최저성장을 나타냈다. 또한 미래의 經濟상황을 나타내 주는 景氣豫告指標도 지난 3 月 0.8 的 上昇勢에서 4 月에는 다시 0.1 이 하락한 0.7로 反落하여 不況의 늪을 깊게 하고 있다.

침체속에서도 物價는 계속 올라 지난 1/4 分期 중 도매물가는 前年末 對比 22.2% 가 올라 80 年度 物價上승역제선인 27~28%에 접근하고 있고 失業率은 1/4 分期中 5.6%를 기록하여 68 年 이후 가장 높은 率을 나타내 주고 있다. 이렇듯 지금 우리 경제는 不況과 인플레이션의 동시에 존재하는 스태크플레이션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失業增大에 의하여 인플레이션(物價) 진정이, 또는 인플레이션 증대에 失業이 解消된다는 필립스곡선의 이론도 그 適用을 힘들게 하고 있다.

海外去來에서도 최근의 輸出增加가 年初의 환율인상조치의 효과를 상쇄해 버렸는지 주춤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 지금까지 악화된 국제수지 개선의 기미는 쉽게 보여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 나빠지고 있다. 1/4 分期中 경상수지는 1,479 百萬弗의 赤字를 보이고 있고 이중 貿

易收支가 1,329 百萬弗의 赤字를, 또 貿易外收支도 225 百萬弗의 赤字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物價, 雇傭, 國際收支 모두가 不確實하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78 年下半期 이후 지속해온 금융긴축 등의 경제안정화 작업과 함께 雇傭, 國際收支 등의 것이 함께 再調整되어질 것이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다.

國內經濟의 현상과는 대조적으로 海外 景氣는 지난해 年末에 예측했던 것보다는 약간 밝은 전망을 보여주고 있다. OECD의 경제성장율이 지난 年末 예측했던 0.5% 수준에서 1.2%로 수정 예측되고 있으며 美國經濟도 점차적으로 인플레가 수속되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貿易收支도 정상궤도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러한 景氣예측이 뒷받침되듯이 最近 需要國의 프라임레이트도 지난 3 月의 最高 20%를 고비로 최근에는 12.5%線까지 떨어져 점점 安定勢로 돌아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선진국의 景氣回復은 우리 경제에도 好轉의 기회로 작용하겠지만 지금과 같이 施設投資등이 축소 또는 중단된 상태에서는 선진국의 景氣가 回復된다 해도 이때에 대처할 施設能力의 부족이 있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즉 그때를 위하여 지금이 施設投資등으로 여력을 키워야 하는데 그런 能力이 갖추어지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하면 우리기업이 기업의 環境變化에 대한 適應力이 미흡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오늘과 같은 企業環境 변화에 대한 適應力 약화현상은 그동안 成長政策에서 나타난 불가피한 現象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開放化에 따른 기업의 國際化는 필연적으로 기업의

대규모화를 가져왔으나 이에 수반되는 自己資本 등이 뒷받침되지 못함에 따라 필요한 財源調達을 外部資金에 의존케 되었고 이에 따라 企業의 財務構造는 처음부터 安全性을 갖추지 못했던 것이다. 企業의 財務構造가 弱化되었다는 것은 곧自己資本比率이 낮아진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金利의 조그마한 微動도 기업에게는 적지 않은 코스트부담을 안겨주게 되는 것이다.

II. 企業財務構造의 現象

1. 企業金融의 理論과 構造

企業의 適正財務構造를 일률적으로 정의하기는 곤란하다. 이것은 업종마다 기업규모마다 또 그 기업이 속해 있는 경제상황에 따라 다르며 상대적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는 기업의 自己資本構成이 높을수록 安定性은 높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企業의 財務構造가 높다는 것이 곧企業의 適正財務構造와 같은 의미로 보지는 않는다.企業의 適正自己資本構成에 대하여는 이론적으로는 「모디글리아니」와 「밀러」에 의하여 연구된 바 있다. 이들의 이론은企業의 適正財務構造理論에 대하여는 최초의 연구 시도로 높게 평가되기는 하지만 理論의 전개에 있어 假定과 전제가 많기 때문에 경제환경이 급변하는 현대에 있어서는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여기에서 나온 것이 「스티글리츠」의 租稅負擔與否 등을 포함한一般的현상에 접근된 이론의 전개이다. 그의 결론부문을 보면 기업의 金融借入에 대한 利子지불에 대하여는 損金容認되어 租稅減免對象이 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그企業의 가치는 당해기업이 최대한의 負債를 사용할 때 극대화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기업은 이러한 극대화점을 알면서도 항상 일정 이상의 自己資本을 보유하려고 한다. 이는 상황변동에 대비하여 초래될지도 모르는 財源調達의 어려움에 대하여 사전에 어느정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企業은企業의 운영에 있어서 適正自己資本의 유지를必要로 하며 또한 負債등의 外部資金의 조달에도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기업의 資金調達源을 보면 먼저 내

부資金으로는 自己資本으로 인식되고 있는 内部留保와 減價償却등이 있고 外部에서 資金을 流入하는 方法에는 株式과 社債등의 證券發行과 銀行借入金, 企業間借用등이 있다. 한편 이러한 區分을 財務構造 측면에서 보면 自己資本과 他人資本으로 나누어지고 自己資本에는 内部資金으로서의 内部留保와 減價償却이 있고 또 源泉의 自己資本으로서의 株式이 있다. 他人資本에는 社債와 長期銀行借入金을 포함한 固定負債와 短期銀行借入金, 企業間信用으로 구성된 流動負債로 區分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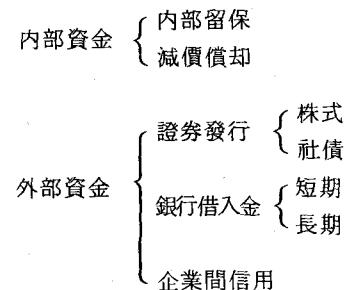
企業이 財源을 調達하는 데는 크게 보아 위와 같이
이 區分되지만 増資를 통한 財源調達이나 負債를
通한 財源調達이나 企業의 資金調達에는 一定
한 費用이나 代價가 수반된다. 即 増資의 경우에
는 配當圧力이 나타나고 他人資本에는 利子支拂
이 수반된다. 利子計算에는 利子率 即 金利의 문
제가 제기된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이와 같이 自己資本과 他人資本과의 구성에서 나타난 최근의 法人企業 資金需給實態를 살펴보고 그리고 企業環境 適應力指標로서의 企業財務構造 측면을 稅制측면에서 기술코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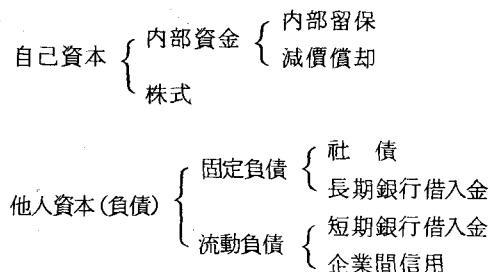
2. 法人企業의 資金需要 推移

우리나라의企業은資金調達에 있어 처음부터外部資金의 의존도가 높았고, 1960年代 經濟開發初期의法人企業의資金調達內容을 보면自己資金의比重보다는外部資金의構成이 높았고 특히經濟開發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면서부터外部資金의企業資本調達에서 차지하는比重이 점차 높아져 갔다.

○ 内部資金と外部資金



○ 自本資本과 他人資本



이러한 경향은 1974年의 第1次 오일쇼크 후에 가장 크게 나타나 이때企業의 財源調達은 自己資金이 2,920億원으로 18.2%의 구성을 보인데 비하여 外部資金은 1兆 3,097億원을 차지하여 81.8%의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1974年 이후에는企業의 自己資金에 의한 調達能力이 다소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그比重은 25%선을 넘지 못하고 있어 先進國의 경우企業資金 所要의過半이 自己資金에 의하여 充當되는 것과는 對照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法人企業에 대한 外部資金의 調達內譯을 보면 證券發行이나 私債借入 등의 直接金融에 의한 財源調達보다는 間接金融에 의한 것이 시종일

관 높은 比重을 보여주고 있다. 間接金融中에서도 銀行 등의 金融機關借入이 가장 높은 比重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企業의 財源調達에 대한 金融機關의 貢度는 第1次 석유쇼크 후에 9,081億원의 借入으로企業의 外部資金의 조달중 69.3%를 점유하기도 했다. 이후 금융기관차입은 차츰 낮아지다가 최근에는 다시 높아져 작년에는 3兆 6,982億원이 銀行등을 통하여 조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기업의 對外債務 即 外資依存度는 1960年代 후반기중 政府의 積極的인 外資導入政策에 따라企業의 外部資金 調達中 34.8%인 702億을 점유하기도 했으나 1970年代에 들어와서는 政府의 外資導入이 選別政策에 따라 그比重이 감소, 1974年度에는企業의 外部資金 調達中 外資에 의한 조달이 18.8%까지 낮추어졌다. 그러나 1975年에 들어와서는 重化學工業推進과 個人部門 資金잉여에 의한 法人企業資金補填率이 크게 저하됨에 따라 다시 그比重이 높아져 42.1%까지 올라갔었고, 그후 차츰 낮아져 작년에는 16.4%까지 낮아졌다. 이는 外資의 도입액수는 많으나 그간企業規模의大型化에 따라 전체

法人企業의 資金調達

<表-1>

(單位: 10 억 원, %)

	1963 - 64 ¹⁾		1965 - 69 ¹⁾		1970 - 72 ¹⁾		1973		1974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自己資金	19.8	41.4	51.6	20.4	131.8	23.0	291.3	25.2	292.0	18.2
外部資金	28.0	58.6	201.5	79.6	442.3	77.0	866.1	74.8	1,309.7	81.8
合計	47.8	100.0	253.1	100.0	574.1	100.0	1,157.4	100.0	1,601.7	100.0
外部資金	28.0	100.0	201.5	100.0	442.3	100.0	866.1	100.0	1,309.7	100.0
間接金融	11.2	40.0	90.2	44.7	198.4	44.9	494.6	57.1	910.3	69.5
金融機關借入	11.2	40.0	90.2	44.7	194.2	43.9	492.8	56.9	908.1	69.3
銀行 ²⁾	9.8	35.0	83.3	41.3	170.0	38.4	417.6	48.2	830.6	63.4
非銀行	1.4	5.0	6.9	3.4	24.2	5.5	75.2	8.7	77.4	5.9
政府融資	—	—	—	—	4.2	1.0	1.8	0.2	2.2	0.2
直接金融	11.3	40.4	41.2	20.4	115.1	26.0	187.3	21.6	153.1	11.7
證券發行	8.6	30.7	27.2	13.5	106.6	24.1	186.9	21.6	176.3	13.5
私債借入	2.7	9.6	14.0	6.9	8.5	1.9	0.4	0.0	-23.2	-1.8
對外債務	5.5	19.6	70.2	34.8	128.7	29.1	184.1	21.3	246.3	18.8

	1975		1976		1977		1978		1979	
	金額	構成比								
自己資金	449.4	19.3	754.0	26.3	1,254.9	31.8	1,514.2	25.1	2,042.7	25.2
外部資金	1,883.3	80.7	2,110.8	73.7	2,688.0	68.2	4,528.0	74.9	6,056.3	74.8
合計	2,332.7	100.0	2,864.8	100.0	3,942.9	100.0	6,042.2	100.0	8,099.0	100.0
外部資金	1,883.3	100.0	2,110.8	100.0	2,688.0	100.0	4,528.0	100.0	6,056.3	100.0
間接金融	750.7	39.9	970.9	46.0	1,319.8	49.1	2,721.7	60.1	3,702.5	61.2
金融機関借入	750.0	39.8	976.0	46.2	1,316.3	49.0	2,717.9	60.0	3,698.2	61.1
銀行 ²⁾	645.8	34.3	758.2	35.9	757.2	28.2	1,831.4	40.4	2,323.3	38.4
非銀行	104.1	5.5	217.8	10.3	559.0	20.8	886.5	19.6	1,374.9	22.7
政府融資	0.7	0.0	-5.1	-0.2	3.5	0.1	3.8	0.1	4.3	0.1
直接金融	339.3	18.0	518.0	24.5	794.5	29.6	1,447.9	32.0	1,358.2	22.4
證券發行	330.8	17.6	523.8	24.8	749.0	27.9	1,346.1	29.7	1,356.0	22.4
私債借入	8.5	0.5	-5.8	-0.3	45.5	1.7	101.8	2.3	2.2	0.0
對外債務	793.3	42.1	621.9	29.5	573.7	21.3	358.5	7.9	995.6	16.4

註：1) 年平均임

2) 韓國產業銀行包含

3) 外部資金은 企業間信用不包含

法人企業資金調達의 國際比較¹⁾

(單位：%)

〈表-2〉

	韓國	日本	美國	英國	西獨	프랑스
內部資金	31.3	47.3	60.1	65.9	62.9	63.0
外部資金	68.7	52.7	39.9	34.1	37.1	37.0
計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註：1) 韓國 1971～77年 平均，外國 1968～73年 平均

資料：“日本經濟을 中心으로 한 國際比較統計(1975年)” p. 62, 日本銀行 統計局

재원조달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表-1〉 參照).

이와같은 우리나라 法人企業의 資金調達은 外國과 비교해보면 뚜렷한 특징을 찾아볼수 있다. 우리나라 1971年과 77年사이 法人企業의 内部資金과 外部資金의 構成比率이 31.3 : 68.7 인데 비하여 美國이나 英國등의 경우에는 同比率이 6.5 : 3.5 정도의 구성으로 企業의 資金調達에 있어 많은 부분을 内部資金에 의하여 해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表-2〉 參照)

法人企業의 外部資金의 調達內譯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와 外國의 주요 先進國과는 對照를 보

여주고 있다. 外部資金 그 自體內에서의 構成을 보면 各國 共히 金融機關借入등 間接金融의 方式이 株式이나 社債發行등을 통한 間接金融에 의한 財源調達보다 높은 比重을 보여주고 있다. 이 중 직접금융을 보면 韓國은 株式發行을 통한 財源調達이 外部資金調達額中 19.8 %로 美國이나 日本보다 높은 비중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1970年代에 들어와 企業의 大型化, 國際化에 따른 自己資本금의 增資가 불가피 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企業의 外部資金構成에 있어 또 한가지 特징적인 현상은 美國이나 日本이 海外借入依存率이 없거나 극히 微微한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전체 外部資金調達額중 26.4 %나 되고 있어

主要國의 法人企業 外部資金의 構成(1971年~1977年平均)

〈表-3〉

(單位: %)

形態別	國別	韓國	美國	日本
間接金融		50.8	58.2	77.7
銀行借入		34.3	48.3	46.4
非銀行借入		16.5	9.9	31.3
直接金融		22.7	40.6	10.5
株式債券		19.8	12.0	6.4
私債借入		2.9	28.6	4.1
政府借入		0.0	—	—
海外借入		0.1	1.2	9.0
計		100.0	100.0	100.0

資料：美國；Flow of Funds Accounts, May 1978,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日本；日本銀行，“資金循環勘定應用表”(昭和 50 年 11 月號) 및 日本銀行 調査月報(昭和 53 年 5 月號)

우리나라企業發展에 있어 外資의 역할이 적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表-3〉에서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企業의 外部資金에 의한 調達と 私債借入에 의한 調達 또한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3. 法人企業 財務構造의 現況

이상의 法人企業 資金需要 實態에서 알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法人企業은 必要한 財源調達에 있어 처음부터 内部資金보다는 外部資金에의 依存度가 높았으며 이는 우리나라企業의 歷史가 일천하여 企業內의 内部資金蓄積의 餘力이 부족한데 基因한 것이며 또 다른 한가지는 급속한 경제발전정책의 추진결과 기업은 자신의 資金調達能力에 비하여 企業内外環境의 영향으로企業의 急速한 大型化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法人企業中 製造業의 規模擴大推

經營規模의 拡大推移(製造業)

〈表-4〉

(單位: 億원, %)

科 目	年 度	1962	72	76	78
資	流動資產	100% (147.0)	5,460.5 (8,027)	27,772.1 (40,825)	48,274.1 (70,063)
	固定資產	100% (122)	6,884.4 (8,399)	28,955.7 (35,326)	57,523.7 (70,179)
產	合計	100% (269)	6,106.3 (16,426)	28,308.9 (76,151)	52,469.1 (141,142)
資	流動負債	100% (115)	5,443.4 (6,260)	30,673.9 (35,275)	56,207.8 (64,639)
	固定負債	100% (48)	12,002.0 (6,193)	51,008.3 (24,484)	96,395.8 (46,270)
本	自己資本	100% (106)	3,748.1 (3,973)	15,464.1 (16,392)	28,521.6 (30,233)

資料：韓銀 企業經營分析 各年度

移를 보면 1962년을 기준으로 할 때 자산 규모는 1972년에는 61배로 1976년에는 283배로 1978년에는 524배로 늘어나 급속한 규모의大型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表-4) 참조)

企業規模의大型화에 따른企業의資本構成에 있어서는經濟開發始作을前後하여서는企業의自己資本構成이他人資本에비하여높았으나經濟成長이加速化될수록이러한구성은反轉되어오히려自己資本比重은낮아지고他人資本構성이높아져가는경향을찾아볼수있다. (表-5) 참조)

自己資本과他人資本의關係比較

(單位: %)

表-5

區分	年 度	1963	67	72	74	76	78
自己資本		52.0	39.8	34.2	24.0	21.5	21.4
資本金		33.2	21.9	18.5	15.9	14.7	14.6
剩餘金		18.8	17.9	5.6	8.1	6.8	6.8
他人資本		40.8	60.2	75.8	76.0	78.5	78.6
流動負債		—	41.1	38.1	43.0	46.3	45.8
固定負債		—	19.1	37.7	33.0	32.2	32.8
計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資料: 韓銀 企業經營分析 各年度

企業利益과 借入金 利子率推移(製造業)

(單位: %)

表-6

比率	年 度	70	71	72	73	74	75	76	77	78
企業經常利益率		8.90	7.90	8.77	11.14	8.90	9.23	9.54	9.21	9.72
借入金平均利子率		13.87	14.16	11.78	9.32	9.62	11.47	10.07	10.41	10.58

資料: 韓國產業銀行, 財務分析 1979.

負擔은 오히려 우리나라가훨씬높아같은조건이라면우리나라의金融費用이過重하다고할수있을정도로높다.換言하면이는우리나라의金利가日本보다도계속하여높게유지되어왔다는것을의미한다. 한편企業의內部資金調達源인減價償却率에있어서는日本이우리나라보다도훨씬높아日本이비록自己資本構成比에서는낮다하더라도自己資金調達능력에서는상대적으로여유가있음을보여주고있다. (表-7) 참조)

이러한他人資本依存度의증가는 전반적으로企業의金融費用負擔을높혀주고있다. 1970年代의企業經常利益率과借入金平均利子率의推移를보더라도73년을제외하고는借入金利子率이企業의經常利益率보다높아지고 있음을보여주고있다. (表-6) 참조)

한편企業的主要財務比率에대한日本과의比較表를보면自己資本構成比에있어서는韓國이나日本共히기타국가의企業財務構造보다는낮게되어있고이중특히일본은우리나라보다도낮게구성되어있다. 반면企業의金融費用

III. 企業財務構造와 現行 稅制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우리나라企業의外部資金의존도심화는企業의環境變化에대한適應力を약화시키는要因으로作用하고있다. 이러한예는年初의金利및換率引上조치에서도나타나고있다. 78年末製造業의평균自己資本比率21.4%에불과했고賣出額에대한金融費用은12%가넘었던것이今年에는제조업의賣出額에대한금융비용이16%이상

韓·日間 主要財務比率比較

(製造業)

(単位: %)

〈表-7〉

年 度 區 分	自 己 資 本 比 率		借 入 金 利 子 率		減 加 債 却 率	
	韓 國	日 本	韓 國	日 本	韓 國	日 本
1971	20.2	19.2	13.4	8.6	8.0	13.5
1972	24.2	19.1	12.0	8.1	10.8	13.4
1973	26.8	18.2	8.6	8.4	13.0	13.8
1974	24.0	17.9	10.5	10.3	13.2	13.8
1975	22.8	17.0	11.3	9.6	11.9	13.6
1976	21.5	17.0	11.9	9.4	11.5	13.5
1977	22.2	17.4	13.1	8.5	12.4	13.3
1978	21.4	18.3	12.4	7.3	12.6	13.6

資料: ① 韓銀 企業經營分析 各年度

② 日本 財政金融統計月報 1979. 11.

이 될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이것이 진축하의 기업경영에 적지않은 애로요인으로作用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기술한바와 마찬가지로 원천적으로는 기업의 自己資本能力에 있다 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도상 他人資本보다도 自己資本에 의한 財源調達을 유도하는 장치가 충분치 못한데도 한 요인이 있다고 하겠다.

1. 企業財務構造의 弱化原因

企業財務構造의 弱化要因은 現行 制度上 借金經營의 有利性에서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보면企業이 施設投資를 할 경우 銀行등의 금융기관으로부터 貸出을 받아 新設投資나 施設擴張을 할 때 그 借金利子에 대하여는企業의 課稅所得計算上 損金容認되고 있으나 株式의 新株公募나 有償增資 등 自己資本 增大를 통하여 財源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그 増資된部分의 配當金에 대하여는 損金容認되지 않음은 물론 政策의 으로는 오히려 高率配當을 유도하고 있어 이것 이 결과적으로는企業의 借金經營을 選好케 하여企業의 自己資本充實化를 淹害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물론 현재의 稅法上에는 이와 같은 借金經營의 有利性에 대한 補填策으로 公開法人, 中小企業法人에 限하여 株式等 直接金融

을 통한 資本을 增資한 경우에는 增資分의 公金利水準相當을 時限의으로 所得控除하여 주는 增資所得控除制度가 있다. 그러나 이 制度도 우리나라 企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非公開法人을 제한하는 등의 지나친 對象의 制限과 增資時限(1980年), 控制時限(1982年)의 制約으로 借金經營의 有利性을 충분히 상쇄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

특히 增資所得控除時限은 79年末 稅法改正時 기업의 自己資本 비중을 높이도록 유도하려는 방향에서 각각 一年씩 연장한 것이나 最近의 景氣不況 및 證市의 침체는 기업의 새로운 增資를 어렵게 하고 있어 同制度의 利用은 금년에도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企業의 内部留保를 淹害하는 要因으로서는 非公開法人에게 適用되는 紙上配當稅制의 存置를 들수있다. 紙上配當稅制란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稅制로서 원래의立法취지는 非公開法人의 株主에 대하여 배당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非公開法人의 社內留保所得中一定部分 이상을 株主에게 배당하지 않고 企業에 留保하여 놓은 것에 대하여도 실제로 株主에게 課稅한 것으로 간주하여 綜合所得稅를 課稅하는 制度이다. 外國의 경우에는 이런 紙上配當稅와 유사한 것으로 法人稅의 特別附加稅 형태로 留保所得의 一

定額超過部分에 대하여는 法人稅率보다도 낮은 별도의 稅率로 과세하는 同族法人 留保所得課稅制를 두고 있으며 이때의 稅額과 既히 計算된 法人稅額과 합한 것이 당해년도에 納付하여야 할 法人稅額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와 外國의 稅制를 비교해 보면 外國의 稅制가 同族會社에 限하여 法人稅의 一種으로써 課稅하고 있는데 비하여 우리나라에는 非公開法人에 한하여 留保所得이 있는 경우에는 法人稅의 一種으로서가 아니라 所得稅로서 과세하고 있다는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所得稅率構造가 法人稅率보다도 훨씬 높다는 점을 볼 때 紙上配當稅는 留保所得課稅보다도 훨씬 높은 稅負擔을 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課稅對象에 있어서도 留保所得課稅의 경우에는 株主가 아닌 法人이 課稅對象의 主體가 되지만 紙上配當稅에 있어서는 실제로 배당을 받지 못한 株主가 課稅對象의 主體가 된다는 점에서 차이와 모순을 발견하게 된다. 이는 곧 「所得 있는 곳에 課稅 있다」는 租稅原則에도 상치되는 제도일뿐만 아니라 法人的 留保所得에 대하여 総合所得稅를 과세 당함으로써企業은 社내에所得을 留保시키기보다는 配當을 하려는 경향을 자연적으로 갖게되며 이것이 우리나라 非公開法人의 社内留保를 제약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겠다.

2. 稅制上 企業財務構造 支援制度

① 準備金 · 充當金 制度

準備金이란 貸借對照表上 資本負債項目的 負債計定으로서 一定한 목적을 위하여 會社에 留保되는 金額을 意味하며 이에는 法律에 의한 法定準備金과 定款 또는 任意準備金으로 구분되고 있다. 이러한 성질을 갖는 準備金은 會計學의 인 개념보다는 租稅政策의 인 면에서 課稅所得計算上 捐金項目으로서 많이 다루어지고 있다.

또한 充當金이란 장래의 특정지출에 대한 準備額으로서 그 부담이 당해 사업년도에 속하여 그 金額을 推算할 수 있어야 하는 것으로 그 設定目的은 正確한 期間損益計算을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充當金에는 評價性充當金, 負債性充當金 그리고 自家保險充當金 등의 기타 充當金

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稅務會計측면에서는 準備金이나 充當金이 捐金項目이 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으며 이중 準備金은 特定期間이 지나면 다시 益金還入되어 全額課稅를 당하는 경우와 充當金의 성질로서 設定된 目的에支出된 費用을 相計한 후 殘額만 益金算入되는 경우로 나누어진다. 準備金은 기술한 것처럼 納稅의 移延效果밖에 없는 것도 있고 또한 充當金의 성질을 갖는 것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準備金, 充當金制度는 企業의 資金利用面에서는 상당한 기여를 하게되어 財務構造를 安定化시키는 작용을 하게된다.

현행 우리나라의 準備金, 充當金項目을 보면 準備金은 海外市場開拓準備 등 12個項目으로 나누어져 있고 充當金은 特別修繕充當金을 비롯하여 3個의 항목으로構成되어 있다. 準備金中에는 단순한 納稅의 移延效果가 아닌 支出된 費用에 대하여 相計할 수 있는것이 있는데 이에는 海外投資損失準備金과 探礦準備金 그리고 租稅減免規制法上의 技術開發準備金 등이 있다. 反面 日本의 경우에는 準備金이 우리나라와 같이 海外市場開拓準備金을 비롯하여 19개 항목으로 되어 있고 充當金도 返品調整充當金을 비롯하여 6개 항목이나 되어 우리나라보다도 準備金에서 9개, 充當金에서 3개나 더 많이 두고 있다. (<表-8> 參照)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경제현상에 따라 각종의 準備金, 充當金制度를 導入하였다가 폐지하는 신축적인 운영을 하고 있으며 그 한예가 工業化과정에서 채택되었던 公害防止準備金이라 하겠다. 이러한 점은 準備金, 充當金制度의 운영이 會計理論의 인 측면보다는 租稅政策의 인 목적에서 이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점을 유의해 우리나라로 보다 신축적인 제도의 운영이 所望된다 하겠다.

② 特別償却制度

特別償却制度의 設定目的은 投資資金의 조속한 회수로 企業의 원활한 財源調達에 기여하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減價償却制度는 企業資金調達에 있어 内部資金의 주요한 원천이 되고 있다. 특히 特別減價償却制度는 租稅負擔의 實質적 경감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 制度의 效率의 인 운용

準備金·充當金 項目의 韓·日 比較

〈表-8〉

韓國	法條	日本	法條
一. 準備金		一. 準備金	
1. 海外市場開拓準備金	法法 12 의 2	1. 價格變動準備金	措法 53
2. 證券去來 準備金	法法 12 의 3	2. 海外市場開拓準備金	措法 54
3. 輸出損失 準備金	法法 12 의 4	3. 海外投資等 損失準備金	措法 55
4. 海外投資損失準備金	法法 12 의 5	4. 自由貿易地域投資損失準備金	措法 56
5. 價格變動準備金	法法 12 의 7	5. 中小企業構造改善準備金	措法 56 의 2
6. 中小企業施設改替準備金	法法 12 의 8	6. 金融鑛業等 公害防止準備金	措法 56 의 3
7. 探鑛準備金	法法 12 의 6	7. 特定鐵道工事償却準備金	措法 56 의 4
8. 法令에 의한 準備金 (保險法, 銀行法 등)	法法 12	8. 原子力發電工事償却準備金	措法 56 의 5
9. 技術開發準備金	租減法 4 의 9	9. 特定ガス導管工事償却準備金	措法 56 의 6
10. 施設貸與損失準備金	租減法 4 의 11	10. 計劃造林準備金	措法 56 의 7
11. 地方施設移轉準備金	租減法 4 의 12	11. 電子計算機返品損失準備金	措法 56 의 8
12. 炭礦保安施設準備金	租減法 4 의 16	12. プログラム準備金	措法 56 의 9
二. 充當金		13. 株式賣買損失準備金	措法 56 의 10
1. 特別修繕充當金	法 12 의 9	14. 證券去來責任準備金	措法 57
2. 退職給與充當金	法 13	15. 商品去來責任準備金	措法 57
3. 貸損充當金	法 14	16. 渴水準備金	措法 57 의 2
		17. 異常危險準備金	措法 57 의 3
		18. 探鑛準備金	措法 58 의 2
		19. 海外探鑛準備金	措法 58 의 2
		二. 充當金	
		1. 貸損充當金	法法 52
		2. 返品調整充當金	法法 53
		3. 賞與充當金	法法 54
		4. 退職給與充當金	法法 55
		5. 特別修繕充當金	法法 56
		6. 製品保證充當金	法法 56 의 2

資料：各國稅法 1980 年版

은 租稅政策의 인 측면에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때문에 각국은 기업의 시설투자 유도 등에는 반드시 特別減價償却制度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세법상 特別償却制度의 내용을 보면 〈表-9〉에서 보는 바와같이 研究, 試驗, 職業訓練施設에 限하여 50 %의 1回 特別

償却을 인정하고 있으며 기타는 대부분 法人稅法施行令上의 一般償却方式에 추가하여 이의 20 %, 또는 30 %의 할증상각방식을 택하고 있어 외국처럼 初年度 特別償却이나 均等償却方式보다는 投資資金의 조속한 회수를 기하지 못하고 있다.

租稅減免規制法上에서도 重要產業에 대한 租稅

〈表-9〉

特別償却制度

區 分	對 象 資 產	要 件	特 別 償 却 率
①製造業 鑛	事業別固定資産	年平均 每日 12時間 以上 稼動 (申請要件)	20 %
②建設業	國土建設用重機 裝備	上同(증기관리법등록) 위 ①②는 다음 의 특별상각의, 有無에 不拘하고 상각 됨(申請要件)	20 %
③鑛·水 製 造 業	輸出用事業別 固定資産(機械 裝置)	①輸出事業이 總收入金額 50 % 以上 實績 ②輸出收入金額이 50 %未滿의 경우	$\frac{\text{外貨收入金額}}{\text{總收入金額}} \times 30$ $\% \times 200 \%$
④綠色 申告法 人	機械裝置		20 %
⑤中小企業 (製造鑛業限)	機械裝置	中小企業(令 68 條參照)	50 %
⑥各事種業	研究·試驗·職業 訓練施設	技術開發을 위한 施設投資한 것	1回限 50 %
⑦各事種業	事業用固定資産	國產機資材投資 (1975年分만 적용)	40 ~ 80 %

註：法人稅法上의 制度만을 발췌한 것임.

特例의 하나로 一般償却 범위액의 100 %를 追加 생각할 수 있는 特別償却制度를, 法人稅의 直接 減免과 投資控除(投資額의 8%, 또는 10%)중에서 택일토록 하고 있어 이 제도의 유효한 이용은 미흡하다고 볼수 있다. 이밖에도 租稅減免規制法에서는 100 %割增償却對象이 되는 산업이 외의 重要產業에 대하여는 一般償却의 60 %를 追加償却토록 하고 있으며 또한 중요산업을 영위하는 者에게 施設을 貸與하는 施設貸與產業에 대하여도 60 %에서 100 %까지의 特別償却을 허용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현행의 特別償却制度는 여러종류가 있으나 이중 한가지의 特別償却方式을 택한 경우에는 다른 特別償却方式은 택할수 없도록 되어 있는 등 特別償却制度의 운영에 제한을 두고 있어 同制度의 活用에는 충분한 성과를 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特別償却制度의 效率性을 높이기 위해서는 現行制度의 재조정과 아울러 均等償却制度나 初年度 特別償却制度 등도 導入擴充하는 方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準備金, 充當金制度와 特別償却制度 이외에도 企業財務構造 改善을 도모하는 直·間接的 支援制度로는 投資에 대한 特別控除方式이 있다. 여기에는 이미 기술한 增資所得控除制를 비롯하여 石炭增產所得控除, エネ지節約施設에 대한 稅額控除, 環境保全用物品製造業 등의 環境保全과 관련한 投資의 稅額減免 또는 稅額控除, 新技術을 企業化한 所得에 대한 特別控除 등이 있다.

IV. 改善 方向

企業財務構造 健實化를 유도하기 위하여는 이미 기술한 財務構造 弱化要因에 대한 분석과 현재 이용되고 있는 企業財務構造와 관련된 支援制度에 관한 再檢討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方向에서 最近 企業의 財務構造가 弱化되어 가고 있는 현상을 分析해 보면 한가지는 企業 스스로가 既存의 企業財務構造 健實化制度를 충분히 活用하지 못한 점을 지적할 수 있겠으며 또 다른 한가지는 現行 제도상 自己資本의 증대

를 통한 기업경영보다는 借金을 通한 企業經營 方式이 아직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하겠다. 따라서 현재처럼 借金에 따른 利子支拂에 대한 捐金 容認등은 長期의 方向에서 별도의 개선 연구가 必要하겠으며 단기적으로는 현행 増資所得控除制에 있어서 適用對象 및 期間을 연장함으로써 借金經營의 有利性을 相殺시켜주는 方案이 摸索되어야 하겠다.

企業의 自己資本 增大策과 마찬가지로 기업의 재무구조 전실화를 기할려면 企業內의 内部貯蓄의 提高도 繫要하다. 이는 곧 企業内部資金의 社外流出의 防止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위하여는 현행의 非公開法人에게 適用되는 紙上配當稅制의 廢止가 검토되어야 하겠다. 특히 企業内部資金의 社外流出 防止와 少額株主를 保護라는 二重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는 紙上配當稅制는 外國의 例와 같이 法人稅法上의 留保所得課稅制로 轉換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企業의 自己資本比率 提高를 기하려면 이상에서 기술한 2 가지 방법 이외에도 다음 몇 가지 사항을 검토, 추가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 法人稅率 構造의 改編을 고려해 볼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法人稅率 체계는 中小企業法人, 公開法人, 非公開法人에 대하여는 課標所得의 多寡에 따라서만 최저 15 %에서 최고 40 %까지의 差等稅率制로 되어있지만 차제에 이러한 方式을 지양하고 自己資本比率을 고려한 稅率體係로 轉換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하겠다. 이러한 方式은 현행 稅制관행과는 크게 벗어날지는 모

르지만 企業의 自己資本比率의 增大라는 方向에서는 必要한 制度라고 볼수도 있을 것이다. 即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現行의 所得에 따른 法人稅의 차등세율 구조를 自己資本과 所得을 함께 고려하여 自己資本이 충실했을 기업에 輕減稅率을 適用하는 課稅方式으로 轉換하거나 또는 현행의 所得에 따른 課稅方式에서 自己資本에 따른 公金利水準 상당액을 上限으로 하는 差等所得(稅額)控除方式으로 轉換하는 方法을 들수 있다.

둘째 : 公害防止準備金制度와 換率變動準備金制度의 도입을 검토할 必要가 있을 것이다.

우선 公害防止準備金制度는 急速한 產業發展에 따라 公害問題가 現실적으로 심각하게 볼 수 있는데 反하여 企業의 公害防止시설은 빈약한 상태에 있다. 특히 公害防止施設에는 一般的으로 막대한 資金이 所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때 公害關聯 업종에 대하여는 一定期間동안 시한적으로 公害防止準備金을 積立도록 하여 公害防止施設을 적극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다.

다음 換率變動準備金은 최근 換率評價 方式이 그간의 美貨連動方式에서 複數通貨바스켓 방식에 의한 실질적 변동률을 방식으로 전환된 점에 同準備金 導入의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원화가치는 지난 1月 12月 19.8 %의 引上으로 원화의 실질가치에 크게 접근되었지만 아직도 원화가치는 高評價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때문에 外債依存度가 높은 기업에게는 換率變動에 따른 外貨差損發生의 예측되고 있어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기업의 재무구조를 약화시켜주기 때문이다.

